

학교생활인권규정



원 광 중 학 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원광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하며, 학교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 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거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3조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①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하여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4조 【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5조 【수업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중 시간을 준수한다.

- ②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⑥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⑦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6조 【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금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식생활 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⑦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 ⑧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7조 【용모】¹⁾

-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는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율복을 착용할 수 있다.
 - 2. 명찰은 교복의 지정된 위치에 탈부착한다.
 -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하면 부착물을 단다.
 -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를 착용한다.
 -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6. 두발은 지도교사 판단에 따라 단정하게 유지하고 염색·파마는 금지한다.
 - 7.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8. 교내에서 슬리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9.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②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③ 동·하·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동복 : 11월 1일 ~ 4월 14일

- 2. 하복 : 6월 1일 ~ 9월 30일
- 3. 춘추복: 4월 15일 ~ 5월 31일, 10월 1일 ~ 10월 31일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이용과 환경】

- ①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③ 교내외 시설물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
- ④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⑤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 【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 ① 성냥,ライター,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⑤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 ⑦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⑧ 차량과 오토바이
- ⑨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11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③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되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④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1.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단, 담배는 예외로 한다.)
- 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제10조와 제11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5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體罰)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제16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행동 개선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 위원회 구제 신청

제17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학습 과제 부여와 방과 후 교육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및 청소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6. 기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 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 ②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친구 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한 행동
- 4.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제19조 【교내외 생활】 학생의 교내외생활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금지를 갖고 신분에 걸맞게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또는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⑥ 교통질서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⑧ 자전거 등교 시 교문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가며 교내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 ⑨ 교내외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적발 시 선도위원회를 통해 흡연자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2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해당 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징계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 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 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선도위원회를 거쳐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5조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7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경감과 해제】

-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장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제29조 【목적】

- ①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 ②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적·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 ③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학교규칙 준수 문화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운영방법】

- ① 3단계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한다.

1단계 약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사 간 관계개선 ■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 담임교사 중심 학교 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div style="font-size: 2em; color: green;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fe0;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green;">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찰중심활동 ■ 과제중심활동 </div>
--------------------------------------------------------------------------------------------------------------------------------	-------------------------------------------------------------------------------------------------------------------------------------------------------------------------------------------------------------------------------------------------------------



2단계 약속준수단계



3단계 학생생활교육단계



② 학생 의사에 반하는 지도방법은 지양한다.

③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31조 [기타 사안]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영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성찰 중심 활동	1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2	잠시 마음 다스리기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체 필요 시
	3	침묵 수행하기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행동 되돌아보기 등
	4	교사와 부모가 함께 걷기	함께 걷기, 생각하고 대화하기, 글쓰기
과제 중심 활동	5	암송하며 생각하기	시 쓰기, 느낀 점 쓰기
	6	독후감 쓰기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7	감상문 쓰기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8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9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규칙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로의 권리 존중하기
	10	브레인 스토밍/브레인 라이팅	신체 기관과 인권 연결하기, 인권 발상 차리기

영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참여 중심 활동	11	교육활동 도우미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12	웰빙 도우미 활동	봉사활동 하고 웰빙 도우미 일지 작성하기
	13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14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복지 시설과 연계 한 나눔과 참여
상담 중심 활동	15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16	Wee 센터 활용하기	이용 방법, 활동 내용
	17	미술 치료 프로그램	진단, 신뢰감 형성, 감정다루기, 현재의 나 알기, 관계 속의 나 알기,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18	연극 치료 프로그램	Role-play, 또래상담, 심리극, 즉흥극, 상황극, 극 만들기
	19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심신 치료 음악듣기 프로그램(아침방송, 쉬는시간, 점심시간, 귀가시간)
	20	부모 일터 체험하기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부모 일터 체험하고 느낀 점 쓰기
	21	사제동행하기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제5장 교권 보호

제32조 【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3조【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광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다.

제34조【징계】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에 따라 징계한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에 따라 판단 및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5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교감)을 포함하여 학생 인성안전부 부장, 학교규칙 제·개정 담당교사, 학생회 회장(1명), 학생회 부회장(2명), 학부모회 임원(2명) 등 8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 전 회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서 첨부
 4. 학부모 대표회의 의결서 첨부
 5. 학생회 및 학급회장 대의위원회의 의결서 첨부
 6.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②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 【심의와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9조 【연수와 교육】 개정안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2006. 2. 14 개정
2. 2009. 2. 17 개정
3. 2011. 5. 2 개정
4. 2014. 9. 3 개정
5. 2019. 7. 17 개정
6. 2020. 10. 13. 개정

제2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첨 1] : 제7조 원광중 귀공자의 용의 복장 소지품 관련 규정

구분	내용	유의사항	
교 복	착용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복 : 11월 01일 ~ 04월 14일 ○ 하복 : 06월 01일 ~ 09월 30일 ○ 춘추복 : 04월 15일 ~ 05월 31일 ○ 춘추복 : 10월 01일 ~ 10월 31일 	기후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동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복 상의(곤색), 바지(회색), 셔츠(흰색), 조끼(감색)를 입는다. ○ 셔츠, 넥타이, 바지를 착용한 후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셔츠 위 후드티, 맨투맨 등 자율적 허용 (어두운 계열)
	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복 상의 안에 속옷을 입는다. ○ 하복 대신에 여름 생활복을 입는다. 	
	춘추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회색), 셔츠(흰색), 조끼(감색)를 입는다. 	셔츠 위 후드티, 맨투맨 등 자율적 허용 (어두운 계열)
	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에서는 교복의 왼쪽 가슴 부분에 부착한다. (탈부착) 	
두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발은 단정하게 하되 염색·파마는 금지한다. ○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신 발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신분에 맞는 운동화를 신는다. 	
	실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실외에서는 금지한다. 	
휴 대 품	신주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으로 휴대한다. 	
	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휴대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한다. ○ 필요시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담임이 보관할 수 있다. 	
체 육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과 시간에 자율적으로 착용한다. 	지정복 있음	
기 타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내에서 목도리, 장갑, 외투의 착용을 자제한다. 2. 등하교 시 교복과 신발을 착용한다. 3. 각종 장신구(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사용을 금한다. 단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허용한다. 4. 자전거 등교 시 교문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가며 교내에서 타지 않는다. 5. 양말은 반드시 착용한다. 단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예외를 허용한다. 		

[별첨 2] : 제19조 흡연자 처리규정

순	선도 내용	적발 시
1차 적발	교내봉사활동 5일	학부모, 담임통보
2차 적발	사회봉사활동 4일	학부모, 담임통보
3차 적발	출석정지 3일	학부모, 담임통보

[별첨 3] : 제23조 학생생활인권교육

학생 생활 교육 기준표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하는 마음가짐(웃자림 포함))가 바르지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말이나 행동 따위가 버릇없거나 겸손하지 못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경의를 표해야 할 자리에서 무례함)한 언행을 한 학생	○	○		
	5	언행이 불량(행실이나 성품이 나쁨)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1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2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3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4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5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6	인장 또는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7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9	학교 게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10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2	경찰기관에서 조사 후 학교로 신고 된 학생	○	○		
	13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1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15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상거래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수업	1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3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생	○	○	○	○
	4	수업 거부를 주동한 학생	○	○	○	○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6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7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근태	1	무단결석, 조퇴, 외출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약물	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2	담배, 술,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제공한 학생	○	○	○	
	3	담배, 술, 환각제나 마약류의 행위를 방조 및 신고의무 불이행한 학생	○	○	○	
	4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
	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퇴폐 행위	1	도박을 한 학생	○	○	○	
	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3	도박용품을 소지하거나 제공한 학생	○	○	○	○
	4	도박행위를 방조 및 신고의무 불이행한 학생	○	○	○	○
	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6	교내에서 불량물(음란, 폭력성)을 탐독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7	불량물(음란, 폭력성)을 소지하거나 제공한 학생	○	○	○	
	8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어지럽게 한 학생	○	○	○	
	9	부녀자나 노약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금품	1	금품을 절취, 사취하기 위해 학급에 들어간 학생	○	○	○	○
	2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3	금품의 절취, 사취 행위의 방조 및 신고의무 불이행 한 학생	○	○	○	
	4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집단	1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2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어지럽게 한 학생		○	○	○
	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게 한 학생	○	○	○	
	5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교권	1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4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정보 통신	1	교내에서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상습적으로 접속한 학생	○	○	○	○
	2	통신기기 및 사이버를 이용 교사 비방 게시물 게재	○	○	○	○
	3	불법 소프트웨어를 학교 컴퓨터에 설치한 학생	○	○	○	○
기타	1	회복적(단계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한다. 학생생활교육기준표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	○	○	○
	3	학생생활교육기준표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	○	○	○

[별첨 4] : 제34조 교권보호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학생)

구분	항	행 위 내 용	판단유형		징 계						
			경미	심각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강제 전학	고소 고발	
폭언	1	교원 앞에서 심한 욕설(반말)을 한 경우		○				○	○		
	2	선생님을 대상으로 다른 곳을 보며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한 경우	○		○	○	○				
	3	학생으로서 교원에게 말로 대들거나 신경질을 부린 경우	○		○	○	○				
폭행	1	교원 뒤에서 발길질이나 주먹질하는 시늉을 한 경우	○		○	○	○				
	2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져 교원이 맞은 경우		○					○	○	○
	3	학생이 신체를 이용하여 교원을 밀거나 때린 경우		○					○	○	○
	4	교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					○		○
	5	교원의 목살 및 목을 잡은 경우		○						○	○
	6	교원의 머리채를 잡은 경우		○					○	○	○
위협	1	교원이 맞지는 않았으나 학생이 주먹을 교원에게 휘두른 경우		○			○	○			
	2	교원을 도구로 때리려고 한 경우		○			○	○	○	○	○
	3	교원을 흉기로 위협한 경우		○					○	○	○
	4	가족 등 제 3자를 해코지하겠다고 한 경우		○					○	○	○
	5	교원에게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					○		○
성희롱	1	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나 농담을 한 경우	○		○	○	○			○	
	2	성적인 문자(영상)를 보내거나 성적인 사진 촬영을 한 경우		○			○	○	○	○	○
	3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	○	○
재물 손괴	1	고의로 교원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	○	○	○				

구분	항	행 위 내 용	판단유형		징 계						
			경미	심각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강제 전학	고소 고발	
수업 방해	1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2회 한 경우	○		○	○	○				
	2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3회 한 경우		○		○	○	○			
	3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업을 방해한 경우		○		○	○	○			
	4	수업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		○						
	5	수업 중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	○		○						
	6	수업시간에 교원의 주의(2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			○	○			
사이버 매체 폭력	1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			○	○	○	○	○
	2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나 욕을 한 경우	○		○	○	○				
	3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	○	○	○	○
	4	사이버 상에서 교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방을 만든 경우		○			○	○	○	○	○
명예 훼손	1	다른 사람에게 교원에 대해 거짓된 말을 퍼뜨린 경우	○		○						
	2	교원의 말을 비꼬는 흉내를 낸 경우	○		○						
	3	학생이 교원에게 지속적으로 장난전화를 한 경우	○		○						
	4	교원에 대한 불온 낙서를 한 경우	○		○						

교원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학부모)

구분	항	행 위 내 용	판단유형		징 계			
			경미	심각	재발방지 각서	특별 교육	고소 고발	
폭언	1	교원 앞에서 심한 욕을 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	○	○	○	○
	2	통신매체로 교원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한 경우		○	○	○	○	○
	3	교내에서 교원에게 큰소리로 위협한 경우		○	○	○	○	○
폭행	1	교원을 주먹 등으로 위협한 경우		○	○	○	○	○
	2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져 교원이 맞은 경우		○	○	○	○	○
	3	학부모가 신체를 이용하여 교원을 밀거나 때린 경우		○	○	○	○	○
	4	교원의 목살 및 목을 잡은 경우		○	○	○	○	○
	5	교원의 머리채를 잡은 경우		○	○	○	○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1	부당하게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경우		○				○
	2	부당하게 타학교로의 전출을 요구한 경우		○				○
	3	부당하게 징계를 요구한 경우		○				○
성희롱	1	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농담을 한 경우		○				○
	2	성적인 문자(영상)를 보내거나 성적인 사진 촬영을 한 경우		○				○
	3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
재물 손괴	1	학교 공용 및 교사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		○				○

구분	항	행 위 내 용	판단유형		정 계		
			경미	심각	재발방지 각서	특별 교육	고소 고발
수업 방해	1	수업시간에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업을 방해한 경우		o			o
	2	민원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수업을 지연시킨 경우		o			o
사이버 매체 폭력	1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o			o
	2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한 은어적 표현이나 욕을 한 경우		o			o
고소 고발	1	부당하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		o			o
안전 사고	1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		o			o
	2	학부모의 위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o			o
	3	무리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경우		o			o